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이 승 철**

<목 차>

- | | |
|------------|-------------------|
| I. 서론 | III. 민간조사업 법안의 검토 |
| II. 일반적 논의 | IV. 결론 |

<요 약>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주제어 : 민간조사업, 업무범위, 자격시험, 개인정보, 공익

* 본 연구는 제20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을 투고함

** 혜천대학 경찰경호과 교수

I. 서 론

민간조사업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역사서에 의하면 고대의 경우 개인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안황권외, 2007: 267). 이러한 역사를 가진 민간조사업은 19세기 후반이후 군, 사법, 민간영역에 있어서 근대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전쟁, 산업발달 등으로 인해 공권력만으로는 자신의 이익 및 침해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자구책에 대한 대책이 민간조사업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있어서는 민간부분의 성장과 더불어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조사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¹⁾. 또한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피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수사기관만으로는 해결하는데 예산·시간·인력적인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피해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남았었다. 미야 찾기와 같이 개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나 범죄의 여파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사건들은 장기간 미제로 남겨나 경시되는 느낌마저 있다.²⁾

외국의 경우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조사, 정보획득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 혹은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활동을 민간영역에서 탐정(Private Investigator)제도를 통하여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만이 수행 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지만 현재 국가기관으로는 급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한계,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업제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간조사업의 역할은 대부분 심부름센터·홍신소가 대행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비교적 비전문적이고 영세한 업체들로 불륜조사, 채권확보, 신상정보유출, 도청 등에 개입하여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³⁾. 이러한 민간경비분야는 다른 분야와 다

1) 세계 제1의 민간경비회사인 group 4 securicor의 경우 100국에 34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2/2003 7조 6천억의 매출을 나타냈다(안황권 외, 2007: 278)

2) 2003년의 경우 사건해결에 걸리는 시간을 죄종별로 보면, 강도의 경우는 1년 초과가 전체사건의 약 5%, 강간은 약 4%, 폭력은 약 2%임에 비하여 재산범죄인 사기는 약 43%, 횡령은 약 34%, 배임은 약 45%로 나타나 사회적 여파가 큰 대인범죄는 빨리 해결되고 재산범죄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김상균, 2005: 82).

른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라는 기본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의 문제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든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는 지금까지 정부만이 독점해온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분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은 정부존립의 본질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Bitter, 1970; Weber, 1990).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민간조사업의 분야도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민간조사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경비업의 경우에도 경비원의 낮은 자질 문제에 대해 규제의 부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강길훈, 2003; 공배완, 2005; 이상원, 2002; 임명순, 2003). 미국의 경우, CCTV로 인한 사생활침해 우려와 함께 각종 민간조사 및 사설탐정 업무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우려와 문제도 적지 않다(이창무, 2006: 360).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민간조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민간조사업에 대한 연구는 1990년 후반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왔지만 법률제정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16대 국회에서 하순봉의원이 공인탐정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종료 후 자동폐기 되었고 17대 국회에서는 이상배의원과 최재천의원의 발의한 민간조사업의 법안도 회기종료 후 자동폐기 되었다.⁴⁾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대해 기존의 법안(이상배, 최재천 안)과 최근에 발의한 이인기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도입방향에 있어서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상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 규제를 중심으로 한⁵⁾ 논의가 될 수 있는 주체, 업무범위, 자격시험, 감독 및 벌칙사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일반적 논의

1. 민간조사제도의 발전 배경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는 경찰의 독점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과 회사들이 범

3) 현재 세무서에 공식적으로 등록 된 경우가 500여개이고, 비공식적으로 3,000개 이상이며, 서울에만 1,000개가 성업 중 이라고 한다(전대양, 2006: 2)

4) 법조계에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변호사의 직무침해로 인한 갈등의 우려가 있으며 퇴직 경찰관들의 생계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영, 2001: 11).

5) 경비업법 역시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경비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의무, 각종신고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위주이다.

죄문제의 해결을 위해 탐정에 의한 조사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기업들이 경찰에 맡기지 않고 민간조사원들에 돈을 지불하면서 의뢰하는 이유는 Gill(1994, 1998)에 의하면 첫째, 고객들은 처음에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먼저 연락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처리하는데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면접조사에서 조사원은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신고에 대해 민간탐정에게 의뢰하라고 넘기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경찰이 기업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놓으며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인력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많은 경우 경찰의 개입은 제일 나중에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내부에서 행해지는 범죄에 있어서 회사들은 일단 경찰들이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면 자신들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 법인회사나 기업의 이윤보다는 먼저 경찰의 관점을 위해 수사활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형사사법에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은 문제행동을 규제하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직·간접적인 손해를 심화할 수 있다.

셋째, 개인회사들은 기밀로 남기고 싶은 정보를 경찰의 수사를 위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낀다, 그런 정보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나 고객의 정보 또는 수요자 등의 자세한 것들, 그리고 다른 회사의 기밀 사항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넷째, 법인회사들은 민간조사기업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경찰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제를 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어떤 탐정회사를 선택할 것인지, 특정조사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섯째, 어느 직원과 어떤 정보를 조사원에게 접근토록 해 줄 것인지, 또한 계약을 통해 회사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째, 기업은 언제든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안황권외, 2007: 310-311). 이러한 점들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민간조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2.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미아·가출인·실종자 처리

국가기관에서 수사에 의한 미아 및 실종자, 가출인 등을 찾는 것은 인력과 시간, 예산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출인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미귀가의 경우 34.1%에 이르고 있다.⁶⁾ 현재의 제도에서는 심부름 센터수준에서 의뢰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결여와 법의 부재로 인하여 불법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8세 이하의 미아 경우 피해는

6) 2006년 가출발생건수는 42,269건 귀가가 27,841건 미귀가가 14,42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12월1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2006년 발생건수는 7,064건으로 2005년 2,695명에 대비하여 262%가 증가하였다(경찰백서, 2007: 105).

미아자체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영국의 경비업법 제4조는 탐정법에 대하여 어느 특정의 인물, 또는 그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감시, 조회,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조현빈, 2006: 110).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 민간조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2) 경제범죄 처리

경제범죄란 금융, 상거래 등 경제분야에서 불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을 들 수가 있다⁷⁾, 그중 경제범죄와 밀접한 지능범죄(사기, 횡령, 배임, 직무유기, 직원남용, 증수뢰, 통화, 유가증권인지, 문서·인장)의 경우 2006년 경찰통계백서 기준으로 지능범죄 전체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3.3%에 이르러 경제범죄의 상당부분은 사기가 차지하고 있다⁸⁾.

보험사기 범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소리없는 대재앙(The quiet Catastrophe)”으로 여길 정도로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대형 사회악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 보험시장 규모는 연간 67조원으로 세계 제7위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며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 등의 범죄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험사기사건⁹⁾의 현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성 범죄의 적발규모는 현재 매우 미비한 형편이다. 더구나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계층도 의사와¹⁰⁾같은 전문인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¹¹⁾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 아니라 범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편이다. 더욱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더불어 보험사기는 보다 더 지능화 되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행하고 있는데,

7) 2004년 한 해 동안 주요 경제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부정수표단속 30,433건, 절도 155,311건, 배임 5,787건, 횡령 25,702건, 사기 239,664건 등 이 같은 경제범죄에 대하여 국가수사기관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는 중요경제 범죄나 그 액수가 고액의 경우에 한정되고 있으며 또한 절도죄 등의 경우는 신고율이 65.4%로 그쳐 피해자중 35%정도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¹⁾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함으로 수사과정에서 신고인 등 사건관계자 등에 대한 신분노출 등으로 보복과 사생활 침해 등 그 피해가 예상되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원·김상균, 2006: 51).

8) 재산피해 및 회수현황(사기, 횡령, 배임)에 따르면, 재산피해는 3,000,416만원이며 회수는 3,550만원으로 피해 대비 회수금액은 전체 약 0.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경찰통계연보, 2006: 144 재구성).

9) 2006년 보험범죄단속현황을 살펴보면 1,062건을 적발하여 4,009명을 입건하였다(경찰백서, 2007: 149). 2005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23,607건, 금액 180,198백만원 이었다(금융감독원, 2006. 6.13 보조자료).

10) 대부분 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 사기유형은 진료횟수를 과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황정익, 2006: 85).

11)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 경미한 부상을 중상으로 위장하는 사례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사 직원까지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이제는 수사 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건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마다 경찰력을 직접 투입하여 수사하기에는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인들이 다른 범죄에 비해 보험사기 범행을 시도하려는 유혹을 쉽게 받고 있다. 보험회사는 나름대로 자구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단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 비전문적 요원으로는 이러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다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경제의 불황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조사부서는 경영상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보험사는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영업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상 심사를 할 때에 전직 경찰관출신에 의해 철저한 뒷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을 피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그러한 기능을 공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외부의 사설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3) 국민에게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개인을 대상하는 민간조사업은 불륜조사, 소행조사, 개인 신용조사, 사생활보호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국민들은 타인의 소행이나 경력, 재산 등의 각종 정보를 수집 제공해 주는 심부름센터, 홍신소 등에 의뢰하고 있지만 이들은 합법적 방법보다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에 대한 폐해도 상당하다¹²⁾.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12) 2004년 11.29. 연합뉴스에 의하면 서초경찰서는 홍신소 직원을 가장하고 불륜관계를 파헤치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사례금을 제안하도록 유도해 금품을 뜯는 범죄를 검거한바가 있다.

심부름센터 단속실적

() :구속

구분	계		청부살인		불법도청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불법채권추심		기타(공갈, 사기 등)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655	1,017 (129)	2	8 (8)	13	18 (4)	154	230 (30)	158	218 (33)	177	336 (42)	151	207 (12)

출처: 기간 2005.1.28 - 3.15(경찰청)

* 유형은 불법채권추심(27%), 사생활침해(24.1%), 개인정보유출(23.5%) 순이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업의 도입은 필요하다.

3. 민간조사업의 규제방식

민간조사업에 대한 규제는 규제주체와 규제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규제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규제주체가 중앙정부인 경우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하게 된다.

그리고 규제 방식에 따라 자율규제, 시장에 의한 규제, 소송에 의한 규제, 협의에 의한 규제 구분할 수 있다(장석헌, 2007: 44-45).

첫째, 자율규제는 민간조사업체가 민간조사협회 등을 설립, 자율적으로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조사원 선발, 교육훈련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식이다.

둘째, 자본주의 이념에 충실한 시장에 의한 규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조사원의 관리를 못하는 민간조사업체는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하는 규제방식이다.

셋째, 소송에 의한 규제는 민간조사업체가 고객에게 약속이나 이행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이 직접 민간조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반시민이 조사업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민간조사업체나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협의에 의한 규제는 정부기관과 민간조사업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통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여서 법적·행정적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1985년 미국 New York시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협의체를 구성한 지역내경찰-민간경비 연락프로그램(APPL, Area Police Private Security Liasion)이 있다(이창무, 2006: 365-368).

4. 민간조사업법과 경비업과의 관계

민간조사업과 경비업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먼저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민간조사업과 경비업의 공통점은 첫째,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공익성이 강한 영역이다. 둘째,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다.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업무범위에서는 민간조사업의 영역이 더욱 넓고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비업은 5가지의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조사업은 각종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포함한 광범한 업무범위이다. 둘째, 개인정보 취급측면이다. 민간조사업은 업무성격상 경비업과 비교하여 대부분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

Ⅲ. 민간조사업 법안의 도입방향

1. 기본방향

민간조사업법의 기본방향은 주체의 문제, 진입방식의 문제, 소관부처의 문제 등 세 가지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의 문제이다. 이상배 의원안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인기 의원안에서도 민간조사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일본의 탐정업법은 자연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비업법은 법인만이 할 수 있다. 자연인으로 한정한다면 민간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고객에 대한 치안서비스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법인으로 한정하면 민간조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고객에 대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장석현, 2008: 41). 따라서 권리의무의 주체를 법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업의 업무 성격이 공익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조사업의 진입방식의 문제이다. 이상배, 최재천의원안은 민간조사업 진입방식을 등록제로 규정하고 있고 이인기의원안은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의 탐정업법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의미상으로 등록제와 신고제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비업법에는 민간경비업의 진입방식을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제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는 허가를 받은 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사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¹³⁾

일본의 탐정업법은 자연인의 신고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비업법은 법인의 허가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조사업은 고객의 재산과 생명 및 중요한 정보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허가제로 해야 할 것이다.

13) 경비업상 경비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인력 20인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제복 및 장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민간조사업의 소관부처의 문제이다. 민간조사업의 소관부처는 경찰청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법익침해, 계약자인 의뢰인과의 서비스 분쟁, 수사·사법기관과의 업무중첩에 따른 공무방해 등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에 걸친 현장성과 광범위성을 커버할 수 있는 경찰청이 소관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대양, 2006: 59).

2. 민간조사업 법안

1) 업무범위

<표 3-1>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이상배의원(안)	최재천의원(안)	이인기의원(안)
제3조(업무) 1.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제3조(업무) 1.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3.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4.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 재산의 소유자, 국내 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지 5.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 자료의 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제2조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해 가족의 의뢰에 의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확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위의 세 법안은 업무범위는 대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업무범위는 대체로 미국 각 주의 민간조사업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유사한 점이 있다.

민간조사업의 업무부문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의 질적 향상, 국가사법기관과의 보완적 기능, 민간조사업의 수요와 공급, 외국의 사례, 타 법률과의 관계, 규제 정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영역은 업무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범위의 설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플로리다주(Florida State)의 업무범위는, 첫째, 범죄나 위법행

위, 또는 미국정부에 대한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위해 정부와 하청계약을 맺은 사무. 둘째, 특정인이나 특정인 집단에 대한 신원확인, 셋째,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이나 그 밖의 사람의 증거능력을 파악하는 사무, 넷째,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를 파악하는 사무, 다섯째, 분실 또는 절취된 재산의 행방을 찾거나 회복하는 사무, 여섯째,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을 밝혀내는 사무, 일곱째, 범죄수사나 심판위원회, 중재, 민형사재판전 사용될 증거확보하는 사무 등이다(강영숙, 2006: 70).

또한, 캘리포니아주(California State)의 업무범위는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의 모든 주 또는 지역에 반하여 행해지거나 행해지려한 범죄, 또는 불법행위, 개인의 신분, 습벽 행위, 사업, 직업, 정직, 청렴성, 신뢰도, 지식, 충성, 충성심, 활동, 동향, 재휴, 관계, 행태, 명예, 인성,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재물의 위치, 처리, 회수, 개인 또는 재물에 대한 화재, 중산모략, 손실, 사고, 피해, 부상의 원인과 책임, 법원, 위원회, 경찰, 조사위원회를 위해 사용되는 증거의 확보 등이다(김상균, 2007: 15).

영국에서는 2001년 경비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이 제정되어 탐정업을 포함한 민간경비업 전반의 법규제가 규정되었다. 영국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하면 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에 대하여 탐정업은 첫째, 어느 특정의 인물, 또는 그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 둘째, 재산이 멸실된 상황, 또는 그 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감시, 조회, 또는 조사를 말한다(김상균, 2007: 15).

독일탐정의 업무범위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법관련조사(불법근로, 취업시 평판조사 등), 둘째, 비즈니스관련조사(파산사기, 보험사기, 저작권침해 등), 셋째, 일반시민관련조사(개인이혼, 민사관련 문제, 채무자 금융조사 등) (조현빈, 2006: 284 재구성)

프랑스의 경우는 주로 개인대상(이혼, 결혼전 신원조사 등), 기업대상(사내정보에 대한 조사, 신용조사, 인사채용 신변조사, 보험사기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서비스성격으로 구분하면 사적부문(Private part: 신변조사, 실종자 행방자 확인, 결혼관련, 불륜 등), 공적부문(public part: 범죄불법행위, 재판법정증거 자료 등)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의 혼합(노동법 관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상원·이승철, 2007: 16-17)¹⁴.

서비스의 대상으로 구분하면 광의로는 개인부문과 기업부문, 공적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

14) 김상균(2007: 23)의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광범위모델(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및 혼합영역), 중범위모델(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일부), 최소범위모델(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협의로는 개인(신용조사, 행동조사, 사람찾기, 재산환수 등), 기업(행동조사, 신용조사 등), 형사사법(보험, 사기, 절도, 재판증거, 해외도피사범인도), 재판 (재판증거)등 크게 4 부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성격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 1차적으로 사적부문인(개인과 기업부분에 대한 민간조사업제도를 시행하고 정착단계를 보아 2차적으로 공적부문(형사사법, 재판분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사적부분만을 허용하여 민간조사업의 정착실태와 사후 평가를 통하여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자는 것이다. 이 모형은 시행의 시점을 빠르게 할 수 있으며 현행 법률과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외국계회사와의 경쟁이나 고객들에게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지속적인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대상에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으로 업무범위를 개인(신용조사, 행동조사, 사람찾기, 재산환수, 사생활보호, 사고사실확인 등), 기업(행동조사, 신용조사 등), 형사사법(보험, 사기, 절도 등 각종범죄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 재판증거, 해외도피사범인도), 등 크게 3부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업무의 형태, 전문성, 자본, 업무규모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여 민간조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즉, 기업민간조사업면허, 개인민간조사업면허, 형사사법민간조사업면허 등으로 구분하고 자본금과 전문인력, 대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며 다양한 민간조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현대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전문면허의 기준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방안은 장기적으로 현대사회가 더욱 전문화되고 복잡화 되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성격에 의한 접근 방법으로 1차적으로 사적부문 개인과 기업부분에 대한 영역을 둘째, 서비스 대상에 따른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으로 업무범위를 개인(신용조사, 행동조사, 사람찾기, 재산환수, 사생활보호, 사고사실확인 등), 기업(행동조사, 신용조사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면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2.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과약,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3.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4.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5.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6.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저작권침해 등 각종사고 및 침해에 대한 조사.

2) 자격시험

<표 3-2>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이상배의원(안)	최재천의원(안)	이인기의원(안)
<p>제6조 (민간조사원자격시험)</p> <p>①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 소방방재청, 대통령경호실, 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법의학·법과학·경찰학·범죄학·소방학·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4. 제18조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서 중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③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제6조 (민간조사원자격시험)</p> <p>①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p>②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만20세 이상의 대한민족국민은 누구나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찰청직원,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형사소송법」 상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형사법학·경호경비학·안전관리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강의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3. 제3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 민간업체에서 조사 등의 업무를 취급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p>④ 제3항 각 호 중 2 이상의 분야에서 근무한 자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p> <p>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필기)과 제2차 시험(실무) 및 제3차 시험(연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제21조</p> <p>①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p> <p>②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항</p> <p>민간조사원의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이론), 제2차 시험(실무)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이상배의원안은 연령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시험의 응시자격에 지나친 제한을 두고 있다. 자격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 기술능력, 경력 등이 요구되는 것은 전문화와 분업화 되어가고 있는 경향과 부합하는 것이지만 학문적 능력, 국가기관의 수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민간조사업 도입의 목적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¹⁵⁾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최재천의원안의 경우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8-25세, 호주는 18세 이상으로 되어있다¹⁶⁾. 한국의 경비업법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인 공익성을 감안할 때(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적 인식을 기초로 하면) 최소한 병역필의 연령인 2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배의원안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험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재천의원안은 제1차시험(필기)과 제2차 시험(실무) 및 제3차 시험(연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이인기 의원안은 제1차 시험(이론), 제2차 시험(실무)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험의 경우는 형식적인 성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경비업 자격시험과 동일하게 1차 시험(이론), 2차 시험(실무)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수사기관, 민간업체 조사업무 7년 이상의 경우 1차 시험의 면제는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경우 통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와 동일하게 관련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 경력자로 해야 할 것이다.

15) 미국의 경우 탐정시험의 합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험의 내용이 경험을 요구하는 관계로 20-30%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응시자도 대부분 수사기관의 전 현직 수사관이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수사기관의 간부도 상당수다(강영숙·김태환, 2006: 40).

16) 미국 11주가 18세 이상, 3개주가 21세이상, 6개주가 25세 이상으로 규제, 캘리포니아소비자문제부의 민간경비 및 조사국은 민간경비원의 자격요건으로 연령은 18세 이상인자로 대학에서 경찰학, 형법, 형사사법을 전공하고 3년의 조사경력이 있어야 하고 FBI에서 시행하는 신원조회에 통과해야 한다.

3) 감독 및 벌칙

<표 3-3> 민간조사원 감독

이상배의원(안)	최재천의원(안)	이인기의원(안)
<p>제32조(감독)</p> <p>① 민간조사업자는 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p> <p>② 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감독시기, 감독통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감독)</p> <p>① 민간조사업자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p> <p>② 법무부장관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0조(감독)</p> <p>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함</p>

이상배의원안과 이인기의원안은 감독기관을 경찰청으로 최재천의원의안은 법무부로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감독관청은 대부분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민간조사업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발급받고 일정한 세금이나 보험에 가입한 후에 등록하여 활동하면서 주 정부의 민간조사업 담당부서에서 직접면허취소나 업무중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불법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형사법적인 처분을 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전대양, 2006: 59).

한국은 외국과 상황이 다르므로 감독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상대방에 대한 법익의 침해, 계약자와 의뢰인과의 서비스 분쟁, 사법기관의 공무방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성이 가장 밀접한 경찰청으로 해야 할 것이다.

<표 3-4> 민간조사원 벌칙

이상배의원(안)	최재천의원(안)
제53조(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의 등록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받은 자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을 하거나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나 경찰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조사한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자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4.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조사원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제55조(벌칙)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업을 하거나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조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한 자 2.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자 3.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4.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수집·조사한 자 3. 제2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자 4.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한 자 5.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기준 및 성공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자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사건의 쌍방 당사자들로부터 이중으로 사건을 의뢰받고 조사한 자 4.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의뢰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p>3.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사건의 쌍 방당사자들로부터 이중으로 사건을 의뢰받고 조사 한 자</p> <p>4.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 건을 유치한 자</p> <p>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p> <p>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 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내지 제54조 및 제56조 내지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 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요청 에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여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직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 지 아니한 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조사원을 두 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과태료처분 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 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 판을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 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 한다.</p> <p>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 요청에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여 사건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직을 한 자 6.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 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 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과태료 처분 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 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	--

이상배의원안은 최재천의원안과 비슷하나 벌칙과 행정규제를 좀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제53조의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민간조사업 성격상 경찰과 검찰 등과 같은 국가기관과의 접촉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그로인한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비교가 어려워 이에 대한 벌칙 수준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배의원안의 제54조 제55조항은 최재천의원안의 제50조 벌칙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조사업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허가 갱신신청 시 허위정보의 제공, 관계규칙위반, 부정행위, 비밀누설금지, 국가기관과 같은 기망행위, 민간조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위반, 불법영업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로서 민간조사업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표 3-5> 미국·일본의 민간조사업 규제

	감독기관	벌칙사항
미국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허가신청 갱신 시 거짓진술·잘못된 정보의 제공, 규칙위반, 부정행위, 위험무기 불법사용, 비밀누설 정부기관 경찰관 사칭행위, 고용인의 잘못 시 고용주 처벌 등
일본	공안위원회	명의대여, 불법영업, 허위보고, 법령위반 고용인의 잘못 시 고용주 처벌 등

영국의 경우 경비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제5조에 의하면 해당면허를 가지지 않는 자가 이 규정에 관계하는 개인적인 민간경비업무를 활동을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약식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감금하거나 최대한 벌령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을 낸다. 기소가 확정되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구금을 하거나 벌금을 낸다.

일본의 경우는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탐정업자에 대해 업무의 상황에 관계되는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탐정업자 등이 탐정업법 또는 탐정업무에 관련된 다른 법령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탐정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탐정업자의 영업소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및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송봉규, 2007: 49-50).

경찰공무원이 입회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입회검사 시 권한은 범죄수사와 다르게 해석한다(제13조).

탐정업자 등이 탐정업법 또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및

탐정업의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안위원회가 해당 탐정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14조).

또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자 등이 앞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탐정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폐지를 명할 수 있다(제15조).

공안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타정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17조).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한 자,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한 자, 공안위원회의 지시에 위반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탐정업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자, 신고서 혹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 혹은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규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혹은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자, 규정된 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기재를 한 자,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입회검사를 거절·방해·기피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9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고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고용인에 대해서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을 과한다(제20조).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간조사사업법안에서 고려해야 할 벌칙사항은 공무원직무집행방해, 부정한 방법의 자격증 교부, 등록증의 대여, 경찰기관과 정부기관의 혼란방지, 업무상 비밀누설, 민간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위반 시, 직원의 교육훈련, 결격사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

또한, 민간조사 업무범위에 따르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된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사실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과, 민간조사사업자와 보조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에 대한 조항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¹⁷⁾.

구체적으로 이상배의원안 제25조 사건부의 작성·보관에서 사건부에 기재된 의뢰인의 개

17) 민간조사 기관이나 사설탐정에 의한 기업 또는 조직의 기밀정보 탐지와, 고객인 의뢰자인과 관련한 비밀이나 정보를 돈을 주고 파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된다(이창무, 2006: 360).

인정보에 대해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건부에 기재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수집·조사할 수 있다. 또한 민간조사업자는 개인정보관리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고 이를 의뢰자에게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박성수·송봉규, 2007: 12-19).

IV. 결 론

민간조사업제도는 경찰서비스의 한계, 민간영역의 발전, 고객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요청, 현행 제도(심부름센터)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미아·가출인처리, 경제범죄처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조사업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비지도사의 도입에서 나타난 문제처럼 그 자격증의 활용에 대한 범위, 구체적인 수요예측, 미래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조사업법안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규제사항을 살펴보면 주체, 허가, 업무범위, 자격시험, 감독 및 벌칙 사항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 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자로 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구체적으로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점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2006). 『경찰통계연보』. 서울 : 경찰청.
- _____(2007).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강길훈(200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6: 291-326.
- 공배완(2005).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인증제도의 필요성 제고” 경호경비연구 9: 1-25.
- 김상균(2005). “민간조사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민간조사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 _____(2007).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호, 10-39.
- 강영숙(2006). 『한국의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강영숙·김태환(2006). “미국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12호 25-50.
- 박성수·송봉규(200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업법안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07년도 국제민간조사학회 제1회 춘계학술세미나집. 1-21.
- 송봉규(2007). “일본의 탐정업법 개관”,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100호, 47-50.
- 장석현(2008). “한국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8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43.
- _____(2007). “민간조사업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7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민간조사업법 추진과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자료집, 41-57.
- 전대양(2006). “민간조사업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이상배·최재천안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33-64.
- 조현빈(2006). “주요국가의 공인탐정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33-64.
- 이동영(2001).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수사연구, 4.
- 이상원·김상균(2006). “공인탐정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2006 한국민간경비학회 제8회 춘계세미나 자료집.
- 이상원·이승철(2007). “민간조사업법안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9호, 1-27.
- 이상원(2002). “Security 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경비협회 제14차 경영자 세미나 발표논문집, 63-101.
- 이창무(2006). “민간경비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호, 365-368.
- 안황권 외7인(2007). 『비교시큐리티제도론』. 서울: 진영사.
- 임명순(2003). “한국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6: 167-193.

- 황정익(2006).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향후 발전과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119-154.
- Bittner, Egon(1970).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Martin Gill.(1994). Crime at Work : Studies in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Leicester: Perpetuity Press.
- _____ (1998). Crime at WorkII : Increasing the Risk for Offenders. Leicester: Perpetuity Press.
- 이상배의원 민간조사업법안, 2005. 8.
- 최재천의원 민간조사업법안, 2005. 10.
- 이인기의원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08. 9. 24.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Lee, Seung-Chal

The important it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include subjects, licenses, the scope of business, qualifying examinations, and supervisory and penal provisions. The subj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should be permitted to be both natural persons and juridical persons in terms of providing various services, but should be permitted to be juridical persons and should be administered on a license system, even in order to ensure public interests.

Concretely, the introduction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be regulated to include the followings: that i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runaways and missing children, investigating the personal identification, habit, way of action, motivation, whereabouts identification, real child confirmation, association, transaction, reputation, and personality of specific persons or specific group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owners of government-vested properties or renounced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of lost properties or stolen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causes of fire, character defamation, slander, damage, accident, physical disability, infringement on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and investigating all sorts of accidents including traffic accidents, insurance accidents, and medical malpractices.

In the qualifying examination, examinees' age should be restricted to be over age 25. The person, who is exempted from its primary examin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be the person, who has the career of over 20 years in related fields, in consideration of its equity with other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In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s the policy institution is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France (the police) and Japan (public security committee), so the National Policy Agency should be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management aspects.

In the penal regulations, especially, we should clarify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so should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and then should ensure the public interest.

Key Words : Private Investigation Law, Scope of Business, Qualifying Examination, Personal Information, Public.